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가정복지국소관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목 차

1. 예 산 총 괄	446
○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446
○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규모	447
2. 예 산 개 요	448
○ 세항별 내역	448
3. 검 토 의 건	449

1. 예산총괄

○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예 산 안	%	기정예산액	%	증 감	%
계	273,503	100	249,215	100	24,288	9.7
기 본 경 상 비	49,656	18.2	46,876	18.8	2,780	5.9
인 건 비	25,566	9.4	24,960	10	606	2.4
관 서 운 영 비	13,196	4.8	12,731	5.1	465	3.7
기 본 경 상 비	10,894	4	9,185	3.7	1,709	18.6
사 업 비	165,681	60.5	145,479	58.4	20,202	18.9
경 상 사 업 비	13,519	4.9	9,098	3.7	4,421	48.5
주 요 사 업 비	152,162	55.6	136,381	54.7	15,781	11.5
기 타 경 비	58,166	21.3	56,860	22.8	1,306	2.3

충청북도 일반회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492억1천5백만원에 비하여 9.7%인 242억8천8백만원이 증가된 2,735억 3백만원임.

○ 가경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정 비 별	예산안	%	기정예산액	%	증 감	%
계	14,941	100	14,463	100	478	3.3
기 본 경 상 비	921	6.5	888	6.1	33	3.7
인 건 비	509	3.4	493	3.4	16	3.2
관 서 운 영 비	245	1.7	244	1.7	1	0.4
기 본 경 상 비	167	1.1	151	1.0	16	10.6
사 업 비	14,020	93.8	13,575	93.9	445	3.3
경 상 사 업 비	539	3.6	335	2.3	204	60.9
주 요 경 상 비	13,481	90.2	13,240	91.6	241	1.8
기 타 경 비	-	-	-	-	-	-

2. 예산개요

첫째, 인건비는 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 | |
|----------|------|
| ○ 노인복지 | 8백만원 |
| ○ 여성회관운영 | 8백만원 |

이 각각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으며,

둘째, 관서운영비는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셋째, 기본경상비는 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 | |
|-----------|--------|
| ○ 아동복지비 | 1백5십만원 |
| ○ 노인복지비 | 1백5십만원 |
| ○ 부녀복지비 | 2백만원 |
| ○ 청소년복지비 | 7백만원 |
| ○ 여성회관운영비 | 4백만원 |

이 각각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음.

넷째, 경상사업비는 2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 | |
|--------------|---------|
| ○ 아동복지 사업비 | 3백만원 |
| ○ 노인복지 사업비 | 1천2백만원 |
| ○ 부녀복지 사업비 | 1억7백만원 |
| ○ 청소년복지 사업비 | 6천6백만원 |
| ○ 여성회관운영 사업비 | 1천 6백만원 |

이 각각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음.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2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 | |
|------------|----------|
| ○ 아동복지 사업비 | 1억8천3백만원 |
| ○ 노인복지 사업비 | 5천4백만원 |
| ○ 부녀복지 사업비 | 4백만원 |

이 각각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음.

3. 검토의견

가정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도전체 세출예산 2,735억 3백만원중 149억4천 1백만원의 규모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소관 세출예산에 비하여 3.3%에 해당되는 4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이를 세분하여 경비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첫째, 인건비는 1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 | | |
|---------|------|
| ○ 상 여 금 | 8백만원 |
| ○ 직부수당 | 4백만원 |
| ○ 일용인부임 | 4백만원 |

으로 상여금 및 직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증가되었으며,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일용인부임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둘째, 관서운영비는 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용인부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인상 지급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임.

셋째, 기본경상비는 1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 | | |
|-----------------------------|-------|
| ○ 아동복지, 노인복지비 | 3백만원은 |
| 각각 사업 업무추진 예비임. | |
| ○ 부녀복지비 | 2백만원은 |
| 강사수당과 장한여성 대상 현지확인을 위한 예비임. | |
| ○ 청소년복지비 | 7백만원은 |
| - 업무추진 예비 | 2백만원 |
| - 청소년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서 발간 | 3백만원 |
| - 청소년 프로그램 안내서 발간 | 2백만원 |
| 으로 계상되었음 | |
| ○ 여성회관 운영비 | 4백만원은 |

청사신축에 따른 자료수집, 업무추진 예비임.

이상과 같이 기본경상비는 행정사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경비로 사료됨.

넷째, 경상사업비는 2억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 | |
|--------------------------------------|---------|
| ○ 아동복지비 | 3백만원은 |
| 모범어린이 초청 위안행사 기념품, 다과에 따른 비용임. | |
| ○ 노인복지비 | 1천2백만원은 |
| -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위문격려 추진비 | 7백만원 |
| - 노인건강교실 운영비 지원 | 5백만원 |
| 은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보조비로 계상되었음. | |
| ○ 부녀복지비 | 1억7백만원은 |
| - 도청 여직원 하계수련과 체육단련 행사비 | 1천만원 |
| - 장한여성 대상자 간담회 추진비 | 1백만원 |
| - 부녀복지업무 추진비 | 2천5백만원 |
| -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 8백만원 |
| - 파소비역제추진 대회참석보상, 감담회 추진 | 9백만원 |
| - 공직자부인 간담회 | 5백만원 |
| - 여성단체운영 및 부녀단체 체육대회지원 | 4천9백만원 |
| 으로 계상되었음. | |
| ○ 청소년복지비 | 6천6백만원 |
| - 장애자 야영대회 추진여비 | 2백만원 |
| - 청소년 대책 추진비 | 5천만원 |
| - 전국청소년 장애자 야영대회 참가지원 | 4백만원 |
| - 모범청소년 및 선도 유공자 시상 | 2백만원 |
| - 청소년육성 10주년 설명회 교재유인, 강사수당, 참석자 보상등 | 8백만원 |
| 으로 계상되었음. | |
| ○ 여성회관 운영비 | 1천6백만원은 |
| - 자원봉사자 연수차량임대, 기념품, 참석보상 | 3백만원 |
| - 여성회관 키본전환기 설치 | 3백만원 |
| - 교육장비 구입비 | 5백만원 |
| - 창고 개축 | 5백만원 |

으로 계상되어 있음.

이상과 같이 경상사업비는 노인복지증진, 여성의 사회활동을 통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대체로 건전하게 편성되었지만,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회 추진비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2억4천1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 | | |
|---------------------------------|-----------|
| ○ 아동복지 사업비 | 1억8천3백만원은 |
| - 시군에대한 경상보조 사업비로 | |
| • 아동복지시설 18개소 수용보호비 | 7천4백만원 |
| • 아동건강육성 2개소 900명 감소 | △3백만원 |
| • 보육시설 53개소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 | 8천1백만원 |
| • 시설피소아동 21명 자립 지원 | 3백만원 |
| • 성화원 담장 시설비 | 7백만원 |
| • 충북육아원 세탁장비 구입 | 2백만원 |
| - 시군에대한 자본보조 사업비로 | |
| • 충북희망원 난방개수 사업비 | 1천9백만원 |
| 은 거의 국비와 사회복지기금보조에 따른 사업임. | |
| ○ 노인복지 사업비 | 5천4백만은 |
| - 일용인부임 인상분 | 1백만원 |
| - 시군에 대한 경상사업비중 | |
| • 노인복지시설 5개소 수용지원 | 4천1백만원 |
| • 경노식당 운영지원 | 1천5백만원 |
| • 노인공동 작업장 3개소 지원 | 3백만원 |
| • 노령수당, 재가노인 봉사사업비,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등 | △6백만원 |
| 으로 계상되었음 | |
| ○ 부녀복지 사업비 | 4백만원 |

성가모자원에 대한 보호비로 계상되었음.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비는 불우아동을 위한지원과 노인복지향상등으로 거의 국비와 기금에 의한 추가편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